금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

금연을 하고싶으신가요?

이 콘텐츠는 금연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연, 금연클리닉, 금연구역, 흡연실, 흡연경고문구,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금연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금연 1
1. 개요 4
1.1. 흡연 바로알기 4
1.1.1. 담배 4
1.1.2. 흡연율 7
1.1.3. 금연의 필요성 8
2. 아동 및 청소년 흡연 예방 11
2.1. 흡연예방 교육 11
2.1.1.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11
2.1.2. 학교 흡연예방 교육 11
3. 흡연자 금연 지원 13
3.1. 금연 치료 13
3.1.1. 금연클리닉 등 13
3.2. 금연을 위한 조치 15
3.2.1. 담뱃갑 포장 규제 15
3.2.2. 담배가격 규제 18
3.2.3. 담배 광고 및 판촉 제한 22
3.2.4. 담배 판매 제한 24
4. 금연환경 조성 28
4.1. 간접흡연 피해 방지 28
4.1.1. 금연구역 28
4.1.2.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 등 31
4.1.3.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33
4.2. 금연홍보 및 캠페인 34
4.2.1. 금연홍보 및 캠페인 34

1. 개요

1.1. 흡연 바로알기

1.1.1. 담배

담배란?

담배

▪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본문).

▹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단서).

▪ "저발화성 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않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2호).

담배의 구분

▪ 담배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구분	내용
궐련(卷煙)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그 밖에 유형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엽궐련(葉券煙)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각련(刻煙)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 출처: 금연 길라잡이 >

※ 전자담배의 유해성

·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로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서 제조·판매되고 있습니다.

·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덜 해롭다는 인식과 달리 2015년 전자담배 사용자 중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90.1%로 궐련과 함께 사용하는 중복사용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니코틴 흡입양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2016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 정부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담배광고 및 판촉규제, 전자담배 성분 표시 검증체계 구축,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 포장(childproof packaging) 도입 등 니코틴 흡입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016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담배 성분

▪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포함하여 69종의 발암물질과 아세트산, 카테콜, 아크롤레인, 아세톤 등과 같은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출처: 금연 길라잡이 >

※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등에는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

1.1.2. 흡연율

흡연통계보기

성인(만 19세 이상) 흡연율

(단위: %)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27.5	27.0	25.8	24.1	24.2	22.6	23.9	22.3	22.4	21.5	20.6	19.3	17.7	19.6	16.7
남자	48.3	47.3	43.7	42.1	43.1	39.3	40.7	38.1	36.7	35.7	34.0	31.3	30.0	32.4	28.5
여자	6.3	6.8	7.9	6.2	5.7	5.5	6.4	6.0	7.5	6.7	6.6	6.9	5.0	6.3	4.2

※ 출처: 각 연도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현재 흡연율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청소년(중1~고3) 흡연율

(단위: %)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12.1	12.1	11.4	9.7	9.2	7.8	6.3	6.4	6.7	6.7	4.4	4.5	4.5	4.2	3.6	3.3
남자	16.6	17.2	16.3	14.4	14.0	11.9	9.6	9.5	9.4	9.3	6.0	6.0	6.2	5.6	4.8	4.4
여자	7.1	6.5	5.9	4.6	4.0	3.2	2.7	3.1	3.7	3.8	2.7	2.9	2.7	2.7	2.4	2.1

※ 출처: 각 연도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질병관리청, 교육부)

※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현재사용률]: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분율

주요 국가별 성인 흡연율 (2023년 기준, 15세 이상)

(단위: %)

국 가	남 성	여 성	전 체
OECD 평균	16.4	10.2	13.2
한국	26.8	3.8	15.3
일본	25.6	6.9	15.7
미국	9.1	6.9	8.0
프랑스	25.4	20.9	23.1
독일(2021년)	17.5	11.8	14.6
멕시코	12.3	5.1	8.5

※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간접흡연 노출률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공장소			57.9	52.1	35.4	22.3	21.1	16.9	18.3	12.0	7.5	7.4	8.6	5.5
직장	45.2	46.0	47.3	40.1	26.9	17.4	12.7	11.5	14.1	10.3	7.5	6.3	7.9	5.4
가정	12.5	11.9	10.9	10.7	8.2	6.4	4.7	4.0	4.7	3.9	3.6	2.6	3.0	2.5

※ 출처: 각 연도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1.1.3. 금연의 필요성

흡연의 영향

니코틴 중독

▪ 흡연은 국제질병분류(ICD-11) 기준에 'Tobacco dependence'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 기준에 'Tobacco Use Disorder'라고 분류되는 약물 중독의 일종입니다.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은 약물 중독의 증상을 유발하는 정신활성 물질(psychoactive agent)로 기분을 좋게 하고, 담배를 지속적으로 찾아 흡연을 하게 합니다(출처: 금연길라잡이)



< 출처: 금연길라잡이 >

간접흡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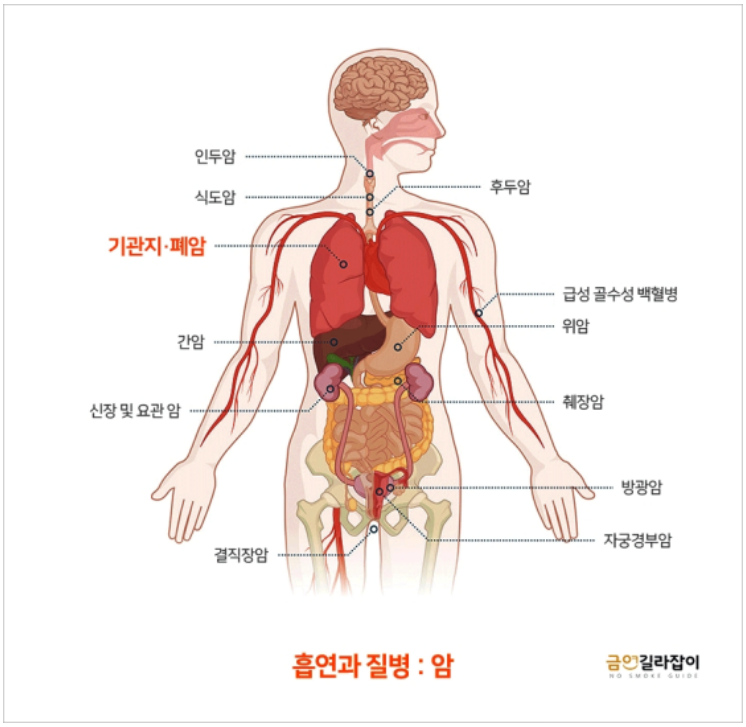
▪ 간접흡연은 본인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흡연시 주변 공기 중의 80% 정도는 담배가 타면서 담배 끝에서 나오는 부류연(Sidestream smoke) 이며, 나머지 20% 정도가 흡연자가 흡입한 뒤 내뿜는 주류연(Mainstream smoke)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은 주류연과 부류연이 혼합된 연기, 그 중에서도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더 높은 농도로 포함된 주로 부류연에 노출되게 됩니다(금연길라잡이 참고).

▪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250여 종 이상의 발암성 혹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게 되며,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에 의하면 간접흡연 노출은 비흡연 성인의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각종 암,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며 영아돌연사증후군, 어린이의 급성 호흡기 질환, 중이염, 천식 발작을 유발합니다(금연길라잡이 참고).

흡연의 위해

흡연과 암

▪ 흡연은 폐암, 구강암, 간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신장암, 방광암, 대장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백혈병 등 각종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루에 담배를 10개비 또는 그 이하로 피우는 사람은 평균수명이 5년 단축되고,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20배 이상 높아집니다(『2015 금연 지침서』, 보건복지부, 참고).



< 출처: 금연길라잡이 >

흡연과 질병

▪ 흡연은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며,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등의 관상동맥 질환뿐만 아니라,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결핵, 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그리고 임신 중 합병증과 영아돌연사, 남성의 성기능 장애와 같은 생식기계질환 등 각종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p7).

▪ 흡연은 눈의 결막을 자극하고 혈관수축을 통하여 허혈성 시신경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눈의 맥락막 혈관의 경화와 망막의 저산소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노인성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자의 경우 노인성 황반변성 발병 위험이 86% 높고, 발병 연령도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5년 빠르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최소 20년 이상 금연을 유지할 때 노인성 황반변성의 위험성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출처: 금연길라잡이)


01. 눈
백내장, 실명(황반변성), 따가움,
과도한 눈물과 감백임
02. 뇌와 신경계
뇌졸중, 중독/금단증상
03. 머리카락
냄새와 탈색, 탈모
04. 코
부비동, 만성 비부비동염, 후각 손상
05. 치아
치주질환(잇몸 질환, 치은염, 치주염),
치석, 변색
06. 구강
인후염, 미각 손상, 입냄새, 구안지 구형
07. 귀
난청, 중이염
08. 폐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과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09. 심장
관상동맥질환, 죽상경화증
10. 가슴과 배
복부 대동맥류, 소화성 궤양(식도, 위장,
소장의 상부), 조기복부 기흉,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11. 남성 생식계
발기부전 등 남성 성기능 장애
12. 여성생식계
조기 난소부전, 조기 폐경, 불임, 생리통,
자궁외 임신
13. 피부
건선, 칙칙해짐, 주름 등 조기 노화
14. 손
말초혈관질환, 혈액순환 장애
15. 골격계
골다공증, 고관절부 골절, 허리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16. 신장
신기능 손상
17. 다리, 발
죽상동맥경화 말초혈관 질환, 냉족,
심부정맥혈전증
18. 순환계
버거씨병(동맥염증, 부정맥)
- 기타
• 면역계 : 감염 저항력 손상,
암걸지발생위험 증가
• 상처회복 기능 손실, 수술 후 회복력 저하
• 당뇨병, 폴연사, 신체기능저하
흡연과 질병 : 만성병
금연길라잡이

< 출처: 금연길라잡이 >

2. 아동 및 청소년 흡연 예방

2.1. 흡연예방 교육

2.1.1.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흡연예방 교육

금연 교육 및 홍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영유아 흡연예방사업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는 유아들에게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여, 평생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연두드림 참고).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안내

▪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과 지역센터 등 유아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눈높이에 맞는 흡연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흡연예방 사업안내와 함께 교육자료의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구분	내용
교육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중인 3~5세 유아
교육인원	1차시 당 약 30~40명
교육장소	선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문
교육기간	매년 상이
교육시간	1학급 당 약 40분 내외 소요, 기관 정규일과시간 내(오전/오후)
교육비용	무료
교육방법	버스형 및 교실형
선정방법	금연두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선착순 아님)
교육신청 및 문의	02-398-7694 / 02-398-4305

▪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은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1.2. 학교 흡연예방 교육

흡연예방 교육

금연 교육 및 홍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학교 흡연예방 교육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 교육

▪ 학교의 장은 학생의 흡연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9조).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 등의 학교 내 흡연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구분	내용
대상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내 학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특화사업 (찾아가는 금연학교, 금연체험관 등) 등을 운영
기본형 학교	선포식 개최, 흡연예방·금연 교육 및 활동,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등
심화형 학교	다양한 흡연예방·금연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흡연예방 활동을 수행하고,기본형 학교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
교육일정	연중

※ 청소년유해약물 지정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2)].

√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란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을 말합니다(「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3. 흡연자 금연 지원

3.1. 금연 치료

3.1.1. 금연클리닉 등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

▪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연두드림 참고).

대상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누구나
서비스 내용	√ 금연교육 및 금연상담서비스 √ CO 또는 코티닌 측정 √ 금연보조제 및 금연홍보물품 제공(6개월)
제공기관	전국 보건소
이용기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금액	무료
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문의



※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금연클리닉

▪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7조제2항).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1544-9030)

▪ 금연을 원하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정보 제공,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연상담 제공 금연지침서와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금연두드림 참고).

▪ 이용시간은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

금연캠프

금연캠프

▪ 금연의지가 있으나 혼자서 금연하기 힘든 흡연자에게 전문적인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금연두드림 참고).

유형	전문치료형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대상	개인 (장기.고도흡연자)	개인(금연필요자.만성질환자)
서비스 내용	4박 5일간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등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전문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금연동기 강화,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제공기관	전국 17개 금연지원센터	
이용기간	센터별 일정을 참조	연중 계속
이용금액	참가비 10만원. 캠프수료 후 인센티브 제공	무료
신청절차	온라인/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 후 3일 이내에 상담사가 전화 드립니다.	오프라인(방문,전화등)접수 ※신청시 해당 17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만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 금연의지가 있으나 금연프로그램에 찾아오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직접 찾아갑니다(금연두드림 참고).

유형	위기청소년	여성	장애인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저소득층
대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만 9세~24세), 단체 및 시설(5인 이상)	흡연율이 높은 여성 사업장, 단체 등(5~20인)	장애인 단체, 기관 등 (5~20인)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5~20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서비스 내용	보건소 등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흡연율이 높고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흡연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 금연상담(대면, 전화) 등 6개월 간 금연프로그램 제공				
제공기관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이용기간	연중 계속				
이용금액	무료				
신청절차	온.오프라인(방문, 전화 등) 접속				

병원·의원 금연치료

병원·의원 금연치료

▪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금연두드림 참고).

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서비스 내용	√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3회차부터 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전액 무료
이용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 **※ 병·의원에 금연 진료 예약 후 방문**
서비스 혜택	√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한 후 신청하면 1~2회차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3.2. 금연을 위한 조치

3.2.1. 담뱃갑 포장 규제

담배 포장지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제20조).

▪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담배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담뱃갑의 표시

흡연에 대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시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이 표시는 담뱃갑 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해야 합니다.

> **※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10종**
>
> · 2016년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경고그림의 경우 앞면·뒷면 각각의 넓이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2항).
>
> · 자세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의 발암성물질
   √ 나프틸아민
   √ 니켈
   √ 벤젠
   √ 비닐 크롤라이드
   √ 비소
   √ 카드뮴
5.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 1544 – 9030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란 다음의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를 말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스티커(붙임딱지) 및 포스터에 의한 광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흡연경고그림 등의 표시방법

▪ 흡연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2항).

▪ 흡연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 단서).

▪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냄새 맡는 담배의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담배에 관한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내용과 방법에 따른 경고그림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
> · 고시 또는 변경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
> · 고시 또는 변경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위반 시 제재

▪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3호).

전자담배 등의 표시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 등 표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담배 등은 흡연경고그림 등을 따로 정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경고문구의 내용

▪ 전자담배 등의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1.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2. 씹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경고그림 등의 표기

▪ 전자담배 등의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등(발암성물질은 제외)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 ※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
> · 2016년 12월 23일부터는 전자담배 등에 다음과 같은 경고그림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
> · 자세한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전자담배 등에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3호).

담배 성분의 표시

담배 성분의 표시

▪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다음에 표시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

▹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 다만,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 용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것

√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해당 용기

√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해당 전자담배기기

▹ 포장: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는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6호).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용어·문구·상표 등의 제한

▪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 등"이라 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의5제1항).

▪ 오도문구 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7호).

오도문구 등의 범위

▪ 오도문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1. 라이트 또는 light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 저타르 또는 low tar

4. 순 또는 純

5. 위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가향물질 함유 표시

가향첨가 규제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함)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

▪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3호).

3.2.2. 담배가격 규제

담배가격 규제

담배관련조세 및 부담금 인상

▪ 1994년 이후 7차례 담뱃값을 인상해 왔으나, 담뱃값 인상률이 낮아 높은 흡연율의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관련 부처는 2003년 5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을 발표하고, 2004년 12월 담뱃값 500원,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출처: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

가격정책의 경과

연도	건강증진부담금
1997년	궐련 1갑당 2원
2002년	궐련 1갑당 2원 → 150원
2004년	궐련 1갑당 150원 → 354원
2011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221원 부과
2014년	·파이프담배: 1그램당 12.7원 ·엽궐련: 1그램당 36.1원 ·각련: 1그램당 12.7원 ·씹는 담배: 1그램당 14.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9원 ·물담배: 1그램당 442원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25원
2015년	·궐련 : 354원 → 841원 ·전자담배 : 221원 → 525원 ·파이프담배 : 12.7원 → 30.2원 ·엽궐련 : 36.1원 → 85.8원 ·각련 : 12.7원 → 30.2원 ·씹는 담배 : 14.5원 → 34.4원 ·냄새 맡는 담배 : 9원 → 21.4원 ·물담배 : 442원 → 1050.1원 ·머금는 담배 : 225원 → 534.5원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 438원(73원/1g)→ 750원(20개비
2021년	담배유사제품(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 1ml당 525원

<출처: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금연) 안내서 참조>

담뱃제품 종류별 제세부담금 부과 현황(단위: 원)

구분		궐련 (20개비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판매가		4,500	4,500	4,500 (가정)
제세부담금		3,323	3,004	2,209.22 (궐련대비 66.5%)
지방세	담배소비세	1,007	897	628
	지방교육세	443	395	276
국세	부가가치세	409	409	409
	개별소비세	594	529	370
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841	750	525
	폐기물부담금	24	24	1.22
	연초생산 안정화기금	5	-	-

<출처: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본문).

▪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담배가 아닌 경우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단서).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750원, 그 밖의 유형의 경우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g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g당 85.8원
5. 각련(刻煙): 1g당 30.2원
6. 씹는 담배: 1g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g당 21.4원
8. 머금는 담배: 1g당 534.5원
9. 물담배: 1g당 1050.1원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13.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1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15.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16. 절주문화 조성 사업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8조제1항).

▪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지방세법」 제48조제2항).

1. 피우는 담배
   - √ 제1종 궐련
   - √ 제2종 파이프담배
   - √ 제3종 엽궐련
   - √ 제4종 각련
   - √ 제5종 전자담배
   - √ 제6종 물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51조).

세율

▪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52조제1항).

1. 피우는 담배
   -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 √ 제3종 엽궐련: 1g당 103원
   - √ 제4종 각련: 1g당 36원
   - √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은 20개비당 897원, 그 밖의 유형은 1그램당 88원
   - √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지방교육세

담배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4호).

세율

▪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4호).

개별소비세

담배 개별소비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세율

▪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담배의 경우 아래 세율의 50%를 적용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구분	종류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21원
	제3종 엽궐련	1g당 61원
	제4종 각련	1g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 1그램당 51원
	제6종 물담배	1g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15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담배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30조).

면세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0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
-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 **※ 담배 면세한도**
>
> 담배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구분	면세한도			비고
담배	궐련		200개비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3.2.3. 담배 광고 및 판촉 제한

담배 광고

담배 광고의 제한

▪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제외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말하며, 잡지의 명칭·내용·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은 제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다만,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행사의 목적·내용·참가자·관람자·청중이나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장소에서 행하는 광고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함)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위의 1.~4.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

▪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제3항).

  ▹ 위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2호).

▪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담배 광고 내용의 제한

담배 광고물 준수사항

▪ 담배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3항).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을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을 것

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 제조자 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위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4항).

▪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위반 시 제재

▪ 담배 광고물 준수사항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4호).

담배 광고에 대한 흡연 경고문구 등의 표기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담배사업법」 제25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의 발암성물질

   √ 나프틸아민

   √ 니켈

   √ 벤젠

   √ 비닐 크롤라이드

   √ 비소

   √ 카드뮴

4.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 1544 – 9030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란 다음의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를 말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포스터 및 스티커(붙임딱지)에 의한 광고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및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1. 담배(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는 제외)의 경우: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2.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의 경우: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4항).

위반 시 제재

▪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3호).

담배광고의 검증

광고내용의 검증

▪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

광고내용의 검증 신청

▪ 제조자 등은 담배 광고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6).

▪ 보건복지부장관은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담배판매장려금·경품·상품권이나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 다만, 담배진열장·스티커 및 포스터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단서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담배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4호).

3.2.4. 담배 판매 제한

소매인이 아닌 자의 담배 판매 금지

담배 판매 제한

▪ 담배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합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제1항).

1. 도매업자(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함)
2. 소매인(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함)

▪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

> ※ 「담배사업법」 **위헌확인**(헌재 2015. 4. 30. 2012헌마38)
>
> ·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으므로 직접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흠결되어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 ·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대표자가 위의 ①부터 ⑤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다음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4. 그 밖에 「담배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의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4항).

※ 각 지역의 조례 또는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초구 : 담배 판매점 지정 거리 제한 강화

· 서울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초구는 서울시 최초로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 시 소매점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넓히고, 일반 소매인과 달리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소매인의 신규 담배 판매점 지정 때에도 지정 조건을 50m로 제한합니다.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4. 및 6.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100미터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
6.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군부대 담배 판매 제한

▪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서 다른 부대와 통합 운영될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7조제7항).

우편 및 전자거래로 담배 판매 금지

우편 및 전자거래로 담배 판매 금지

▪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함)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제4항).

▪ 소매인으로서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 지정된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1호).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1.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합니다.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성인인증장치 부착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함)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1호).

4. 금연환경 조성

4.1. 간접흡연 피해 방지

4.1.1. 금연구역

금연구역

금연구역 지정

▪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8.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9.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10.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2.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5.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7.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9.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5.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6.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7.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1호).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 위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

▪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입니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는지? 금연구역 지정의 위헌 여부**(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금연구역 지정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음식점 전면 금연 위헌 여부**(헌재 2016. 6. 30. 2015헌마813, 헌재 2015. 3. 17. 2015헌마212)

·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일반음식점영업소 영업장의 넓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음식점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흡연을 차단하여 이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PC방 금연구역 지정 위헌 여부**(헌재 2013. 6. 27. 2011헌마315, 헌재 2015. 1. 6. 2014헌마1113)

· PC방과 같이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 방법 이외에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만한 대체수단이 있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아울러 금연구역조항은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업방식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군부대 금연구역 지정

▪ 각급 기관(각 군 소속부대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고려하여 다음에 명시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2조제11호 및 제7조제3항).

1. 군 유치원 및 보육시설
2. 군병원, 연구소, 의료원, 사·여단의무대, 의무(전)대, 연대의무(중)대, 대대 의무(소)대, 의무실 등 군 보건의료기관
3.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4.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5. 군 교육시설
6.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의 복지시설 및 제2조제4호의 체육시설
7.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조제2호의 기본복지 시설
8.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기관

▪ 위의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 일체가 해당됩니다「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7조제4항).

▪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7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연구역

금연구역의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본문).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 **※ 서울 시내의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
> · 서울특별시는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9호).
>
> ·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0조제1항).

그 밖의 흡연 금지 구역

산림인접지역

▪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4조제1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제3항).

자연공원

▪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9호).

▹ 이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호).

문화유산

-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지정문화유산 등"이라 함)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 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
- 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2항).
-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5항).
  - 지정문화유산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5항).

버스 및 택시

- 운수종사자 및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27조의2제2항).
  -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4호).

기차

- 여객(무임승차자 포함)은 여객열차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4호).
  - 여객열차에서의 흡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2호)

공항

- 공항의 착륙대·유도로·계류장·격납고 및 사업시행자등이 화기 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

항공기

-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흡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2호).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8항제1호).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1호).

4.1.2.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설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2호).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 가. 표지 부착
>
>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
>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합니다.

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步道)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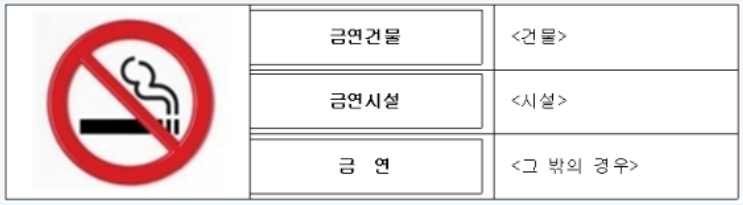
5)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나. 표지 내용

1) 다음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나) 위반 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합니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OOO-OOOO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실 설치

▪ 흡연실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합니다.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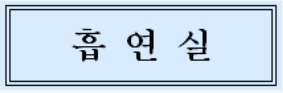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예시)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해야 합니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4.1.3.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 누구든지 위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 지정 신청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2.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3.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하며,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4.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및 게시판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2. 금연홍보 및 캠페인

4.2.1. 금연홍보 및 캠페인

금연홍보

금연 교육 및 홍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군부대 금연홍보

▪ 각급 기관(각 군 소속부대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의 장은 장병 등에게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2조제11호 및 제7조제1항).

금연캠페인

금연공익광고

▪ 금연 캠페인은 대중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담배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바꾸며,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담배 사용을 감소시키거나 금연을 장려하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TV 금연광고는 흡연자의 금연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여러 매체를 통해 꾸준히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 역시 흡연 행동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 우리나라 금연 캠페인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매년 국가 단위의 금연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TV, 라디오 등 전통매체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현장 캠페인을 통한 금연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자체, 언론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관련 연구를 통한 효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www.khealth.or.kr)

▪ 금연두드림(https://nosmk.khepi.or.kr)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http://nosmk.khealth.or.kr)

▪ 금연길라잡이(https://www.nosmokeguide.go.kr)

▪ 한국금연운동협의회(http://www.kash.or.kr)

대국민 금연 홍보사업

사업 목적

▪ 국가 금연홍보 캠페인을 통해 금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금연문화를 조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등 젊은 층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흡연의 피해와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금연) 안내서 참조].

금연캠페인 현황



< 출처: 금연 길라잡이 >

사업 내용

▪ 국가 금연홍보캠페인 운영 및 관리

- (전통매체)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대상별 금연광고 기획·제작·확산 전략 수립
- (뉴미디어) 젊은 층 대상의 금연웹툰, 바이럴 영상 등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운영
- (프로모션)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등 대국민 참여형 오프라인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 (언론홍보) 금연 관련 국내·외 주요 정책 및 동향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 실시 및 이슈 대응

▪ 금연정책 및 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전국민, 금연사업 유관기관 대상 금연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금연홍보캠페인 측정을 위한 성과 평가 운영

- 금연홍보캠페인에 대한 대국민 호응도 점검 및 효과 측정
- 국가 금연홍보캠페인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 종합분석을 기반으로 차기년도 전략 수립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